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건물인도

원 고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조효동

피 고

1. 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2. 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변 론 종 결

[redacted]

판 결 선 고

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108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[REDACTED]까지는 연 6%의, 그

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[REDACTED]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,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